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

※ 동 자료는 '21.6.23.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 기초한 것으로 최종 개정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CONTENTS

01 사모펀드 제도개편 개요

02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내용

03 주요 경과조치 안내

04 향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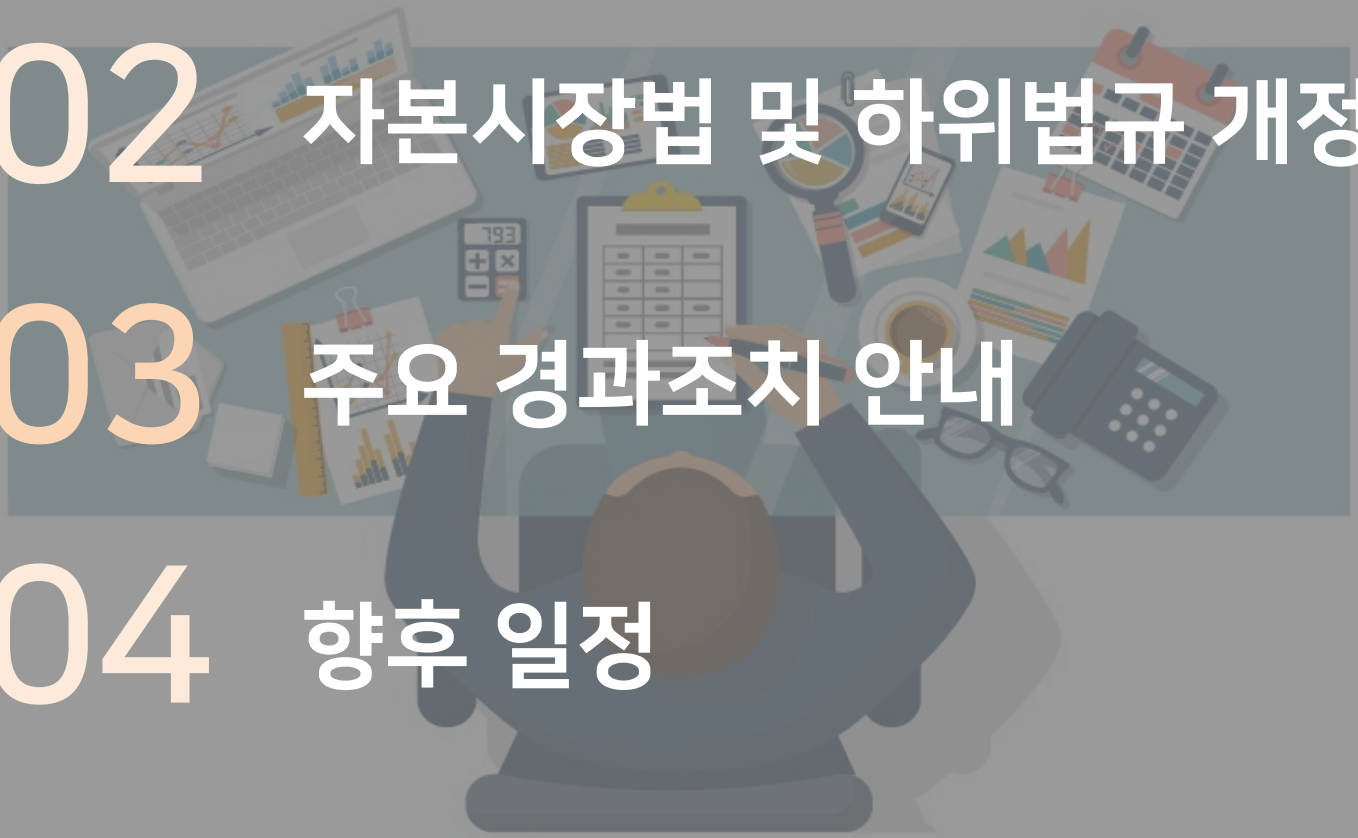

01

사모펀드 제도개편 개요

사모펀드 제도개편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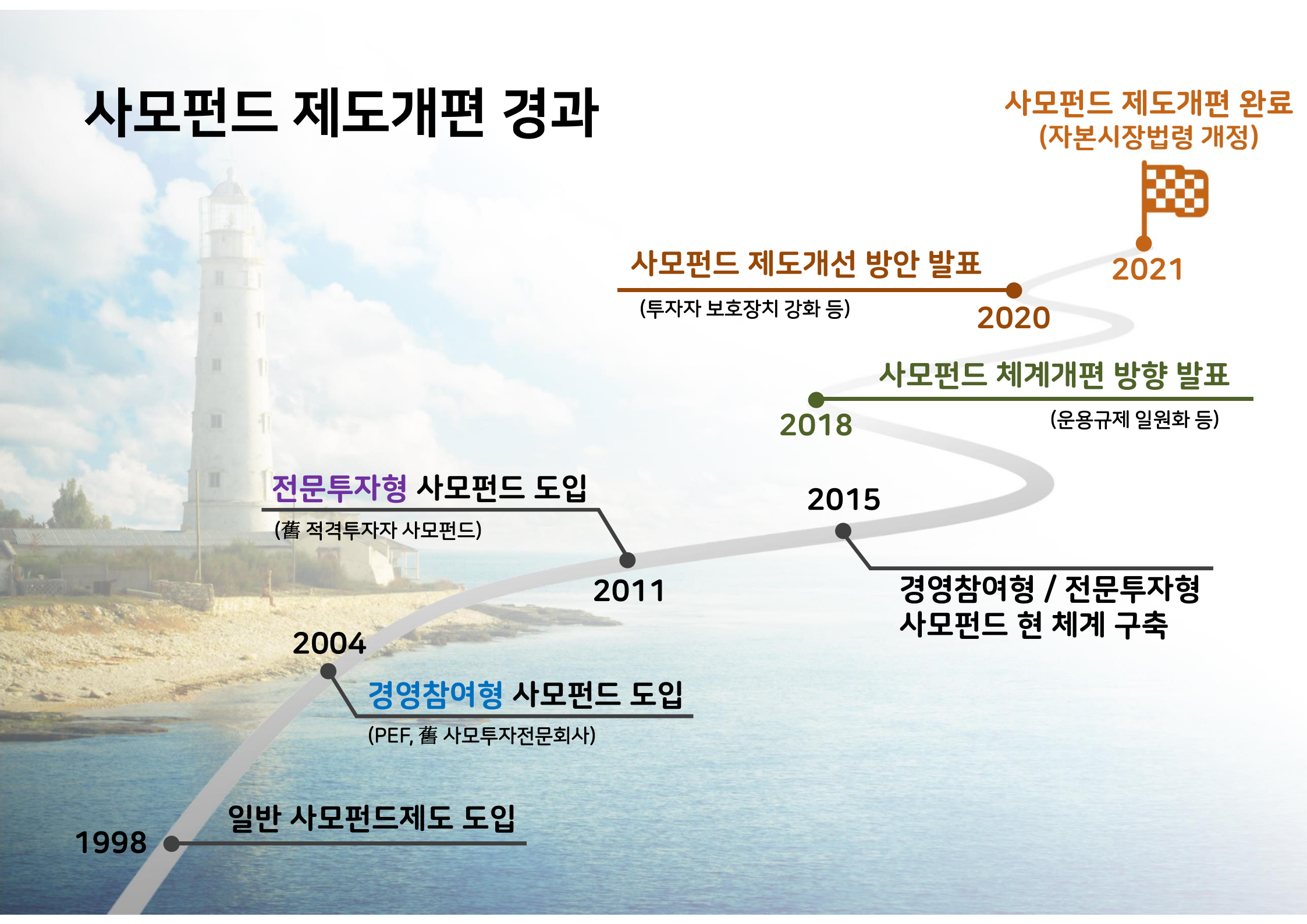

1998 일반 사모펀드제도 도입

2004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도입
(PEF, 舊 사모투자전문회사)

201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도입
(舊 적격투자자 사모펀드)

2015 경영참여형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현 체계 구축

2018 사모펀드 체계개편 방향 발표
(운용규제 일원화 등)

2020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발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

2021 사모펀드 제도개편 완료
(자본시장법령 개정)

운용목적에 따라 구분되었던 사모펀드는

이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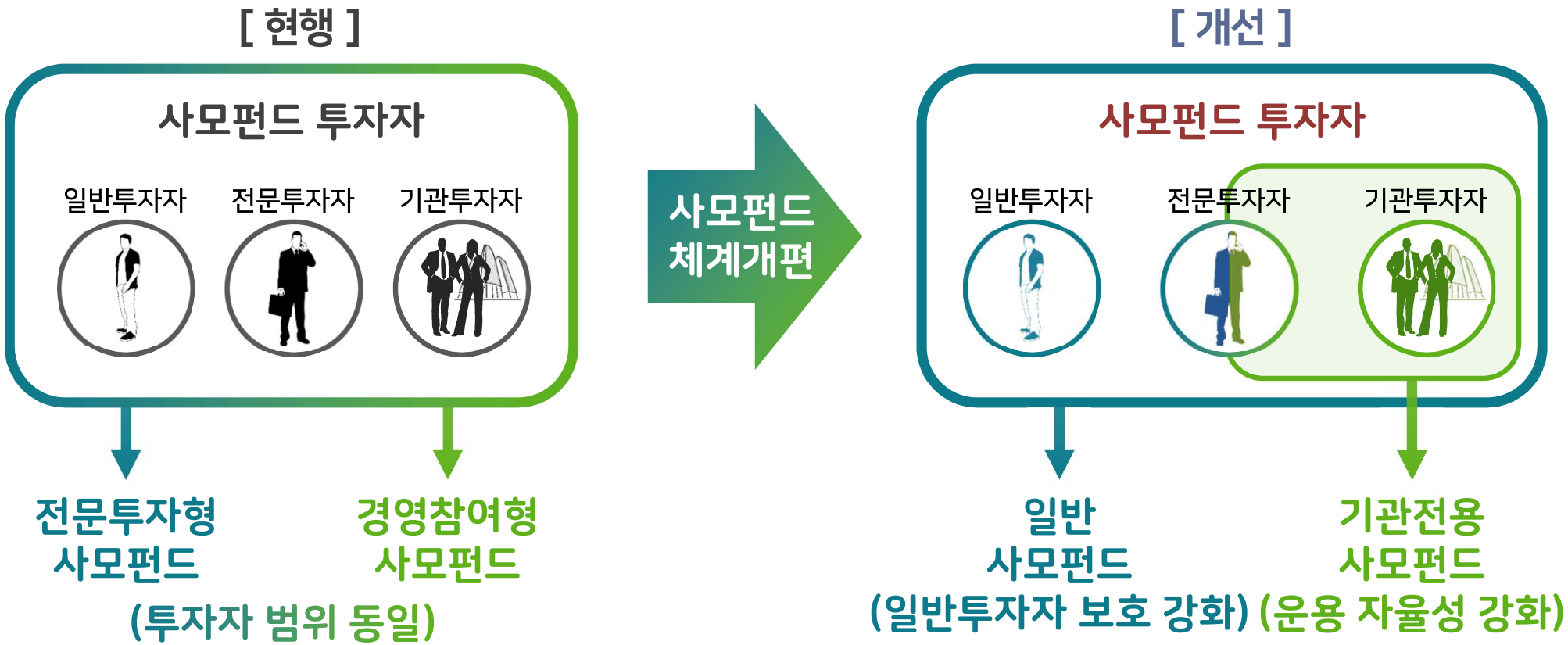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되고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되어 사모펀드 **운용효율성**이 **제고**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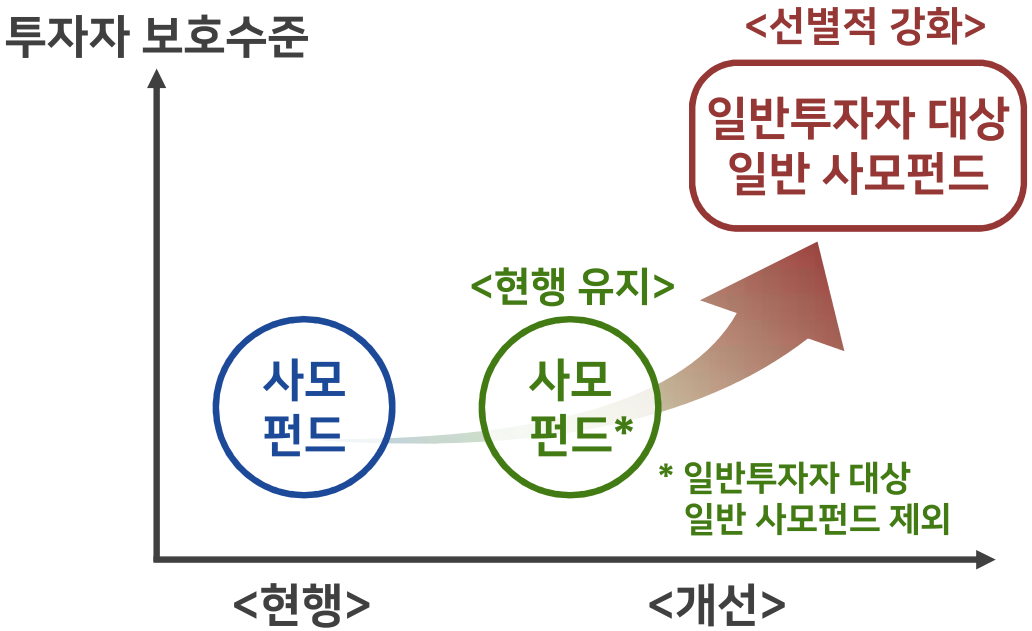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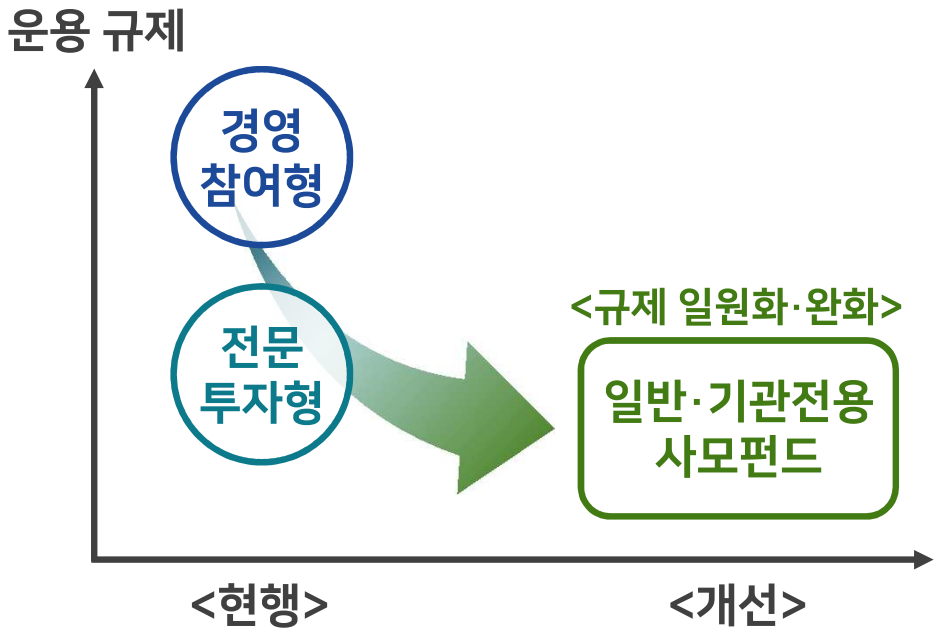

사모펀드 제도개편 개요

	[제도개편 전]		[제도개편 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주체	전문사모운용사 (금융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非금융투자업자)	일반사모운용사 (금융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非금융투자업자)
투자자 범위	① 전문투자자 ② 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 레버리지 200% 초과시 5억원		현행 유지* * ① 전문투자자 ② 최소 투자금액 이상 (3억원, 레버리지 200% 초과 5억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금융기관, 특수법인, 연기금, 공제회,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
설정·설립 보고	사후보고(2주 이내)	사후보고(2주 이내) 단, 일정한 경우* 설립 즉시 보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가 30%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	사후보고(2주 이내) 단, '경영참여목적 펀드'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설립 즉시 보고 * 상출제한집단 계열사가 30%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현행 PEF와 동일)	
투자자 보호장치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 표준화된 설명서 작성·교부의무 없음,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없음 등		① 일반투자자 대상 : 투자자 보호 강화 (판매사·수탁사 운용감시 등) ② 전문투자자 대상 : 현행 수준 유지	현행 수준 유지

사모펀드 제도개편 개요

		[제도개편 전]		[제도개편 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목적		경영참여 목적 外	경영참여 목적	모두 가능	
운용방법	차입	400% 이내	10% 이내 (단, SPC는 300% 이내)	400% 이내	
운용방법	대출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불가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운용방법	의결권 제한	10% 초과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제한	해당 없음	의결권 제한 폐지	
운용방법	지분 투자	해당 없음	-펀드자산의 50% 이상 지분투자 -의결권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및 6개월 이상 보유	지분투자 의무 폐지	
보고의무	업무 보고서	금융투자업자로서 매월 제출	해당 없음 *GP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보고의무 없음	매월 제출	해당 없음 *단, GP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보고 신설
보고의무	펀드 보고서	반기별 제출 * '21.3월부터 분기별 제출	반기별 제출 * 자산총액 100억 미만 펀드는 연도별 제출	분기별 제출 (제출주기 단축 + 보고항목 추가)	반기별 제출 (현행과 동일)
감독·검사		금융투자업자로서 감독·검사	검사권한 불명확 * 법령에 PEF 검사권한만 명시	금융투자업자로서 감독·검사	업무집행사원 검사권한 명확화

02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내용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내용]

1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2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3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

4 모험자본 공급기능 확충

※ 동 자료는 '21.6.23.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 기초한 것으로 최종 개정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됩니다

운용사

1. 비시장성자산 50%↑ 개방형 금지
2.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구체화
3.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제공
4.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5.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
6. 환매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판매사

1. 핵심상품설명서 사전검증·교부
2. 운용사의 운용행위 사후점검

수탁사

1. 운용행위 관리·감시 의무
2. 운용행위 관리·감시 대상
3. 집합투자재산 대사 의무

*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대상

: 집합투자규약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임을 명시하지 않은 모든 일반 사모펀드

(법령 시행일 전까지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로 집합투자규약 개정 및 금감원 보고한 경우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미적용** → 3. 경과조치 안내 참조)

운용사 : (1) 설정단계

1. 비시장성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 설정 제한

법 §249의8 ② 3. 영 §242 ② 5. 규정 §7-22 ②

※ 적용대상 :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비시장성자산에 자산총액의 50% 초과 투자하는 경우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설정

▪ **비시장성 자산 :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자산**(시행령 §260①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

단, 개방형펀드·파생결합증권(사채)·현금성 자산·국공채 및 AA 등급 이상 회사채 등은 제외

①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로서, ② 비시장성 자산에 ③ 자산총액의 50% 초과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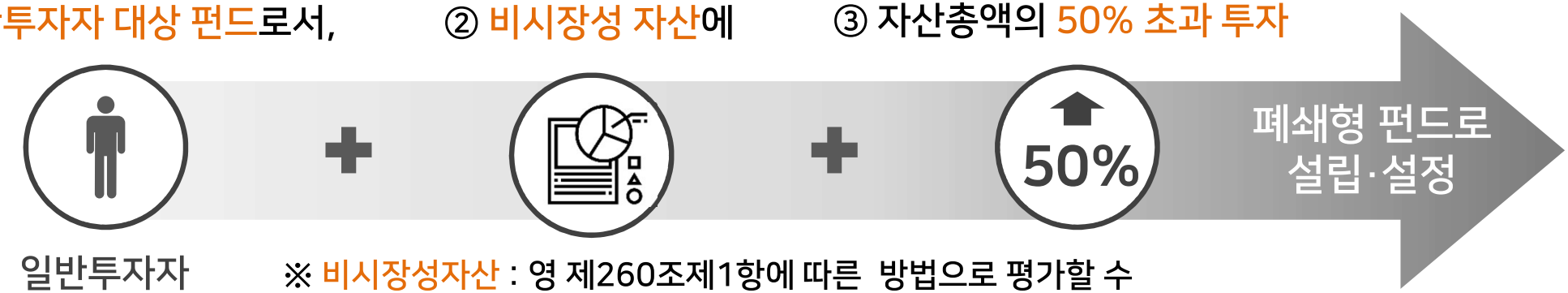

일반투자자

※ 비시장성자산 : 영 제26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아래의 환금성 있는 자산 제외

1) 파생결합증권·사채, 개방형펀드(MMF 등)
2) 금투업규정 §5-23의2①(8호 제외)에 따른 현금성 자산
3) 국공채,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둘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상위 2개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받은 채무증권

운용사 : (1) 설정단계

2.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구체화

규정 §7-8

❖ 펀드 설정·설립을 위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또는 정관)에 다음 사항을 명시

① **고난도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고난도 펀드**라는 사실 (적용대상 :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②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펀드자산 중 **금전대여 비중 및 투자자 범위** (모든 사모펀드)

③ **경영참여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경영참여목적 펀드**라는 사실 (모든 사모펀드)

④ **일반 사모펀드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사실** (일반 사모펀드)

※ 상기 사항은 (1) **집합투자규약**, (2) **핵심상품설명서**, (3) **설정·설립보고서**, (4) **영업보고서** 에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운용사 : (1) 설정단계

3.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 도입 및 기재사항 구체화

법 §249의4 ② 영 §271의6 ① 규정 §7-41의3 ①

※ 적용대상 : 일반 사모펀드

❖ 일반 사모펀드 설정·설립시 운용사는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 핵심상품설명서*는 표준화된 설명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충실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의 개요, 투자전략 및 위험요소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20.8월 행정지도 부속서류(**핵심상품설명서**, '20년말 금감원 배포)를 **서식화**할 예정

< 핵심상품설명서 기재사항 >

1. 기본정보		2. 집합투자기구		3. 투자위험	4. 환매정보
펀드 명칭	운용사 명칭	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위험등급	환매 방법
펀드 종류	관계사 명칭	투자구조 및 최종 기초자산	레버리지 한도	위험요소	환매 수수료
최소 투자금액 및 만기일자	판매· 환매일정 결산, 이익분배	여유자금 운용	펀드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방법	유동성리스크 및 관리방안	환매 절차 및 환매기준가
		보수, 수수료			

운용사 : (2) 운용단계

4. 일반투자자 대상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법 §249의8 ② 2. 영 §92 규정 §4-66

※ 적용대상 :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의무를 신설하고,

▪ 펀드 운용위험에 관한 사항 등을 자산운용보고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

법 시행령 규정

<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

1. 집합투자기구

- 자산 및 부채
- 기준가격
- 운용경과 개요 운용기간 손익
- 매매주식· 금액, 매매회전율
- 집합투자기구 구조
- 투자운용인력
- <영→규 이동>
- 보수, 수수료
- 결산시 분배금
- * 사모펀드 미기재 가능

2. 집합투자재산

- 집합투자재산 종류별 평가액
- 총액 대비 자산별 비중
- 투자대상자산
- <영 신설>
- 동일 운용사 펀드에 대한 투자 현황
- 운용경과·계획 및 수익률
- 투자대상자산 상위 10개 종목
- 동일 운용사 펀드에 대한 고유재산 투자
- * 사모펀드 미기재 가능

3. 위험사항

- <영 신설>
- 운용위험 관리방안
- <영 신설>
- 유동성 위험
- <영→규 이동>
- 환위험 회피목적의 파생상품 거래
- * 사모펀드 미기재 가능

운용사 : (2) 운용단계

5. 사모펀드의 외부감사 수검

법 §249의8 ② 4.

❖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외부감사 대상펀드(**공모펀드와 동일한 요건**)

①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② 자산총액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6. 환매연기 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법 §249의8 ⑤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가 환매연기 또는 만기연장된 경우,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여 환매기간, 환매대금의 지급시기·방법 등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공모펀드는 6주 이내)

판매사 : 판매절차 강화

1.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사전 검증 및 교부

법 §249의4 ③ 영 §271의6 ③~⑥

※ 적용대상 : 일반 사모펀드

❖ 일반 사모펀드를 판매하려는 판매사는,

-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 투자대상자산, 투자방침·전략 등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증
- 투자권유·판매시 **전문투자자 및 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밝힌 투자자** 등을 제외한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활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
  - 단, 판매사가 운용사와의 합의 하에 중요사항을 발췌·표시한 요약자료를 작성한 경우 이를 활용한 투자권유·판매 가능(이 때에도 일반투자자에게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함)

판매사 : 사모펀드 운용감시

2. 판매사의 운용사 운용행위 점검

법 §249의4 ⑤ 영 §271의6 ⑦~⑨

※ 적용대상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판매사는 매분기 운용사가 작성·제공한 '**자산운용보고서**'를 바탕으로

- 펀드의 운용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용행위 발견시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금감원 보고** 및 투자자 통보
- **운용사**는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금감원에 **이의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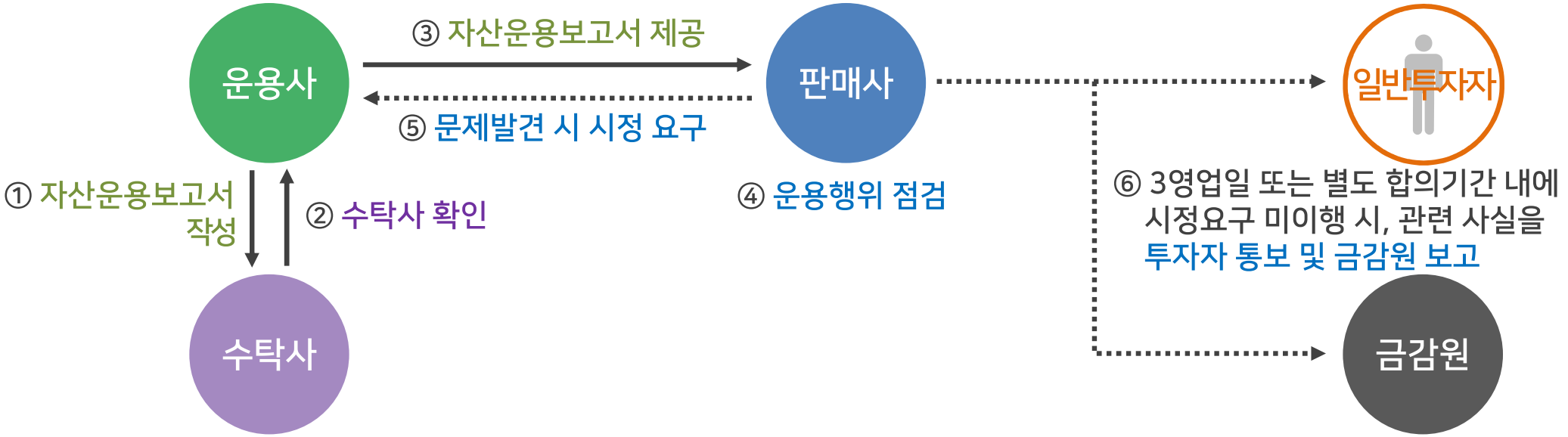

수탁사 : 사모펀드 운용감시

1. 수탁사의 펀드 운용행위 관리·감시 의무

법 §77의3 ④, §247 영 §269

※ 적용대상 :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수탁사는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

- 펀드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및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 지 여부
- 핵심상품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 지 여부
- 매분기 운용사가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 등

* 이를 위해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는 판매사 뿐 아니라 수탁사에게도 핵심상품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필요

❖ 펀드 운용행위 감시 결과 부적절한 운용지시 발견 시, **운용사에 시정 요구**(운용사는 이의신청 가능)

- 운용사 **미이행 시 금감원 보고** 및 투자자 통보

❖ PBS 증권사는 사모펀드에 레버리지(신용공여 등)를 제공한 경우, 그 **위험수준을 관리**하여야 함

※ 구체적인 사항은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1.6.28., 금융투자협회)』 참조

수탁사 : 사모펀드 운용감시

2. 수탁사의 운용행위 관리·감시의무 대상

법 §249의8 ② 5. 영 §271의11 ①

❖ 수탁사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를 관리·감시해야 하는 펀드 등의 범위

(현재는 공모펀드만 감시대상)

①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②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①의 펀드로부터 투자받는 일반 사모펀드

③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가 주주·사원인 투자목적회사

< (참고)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일반 사모펀드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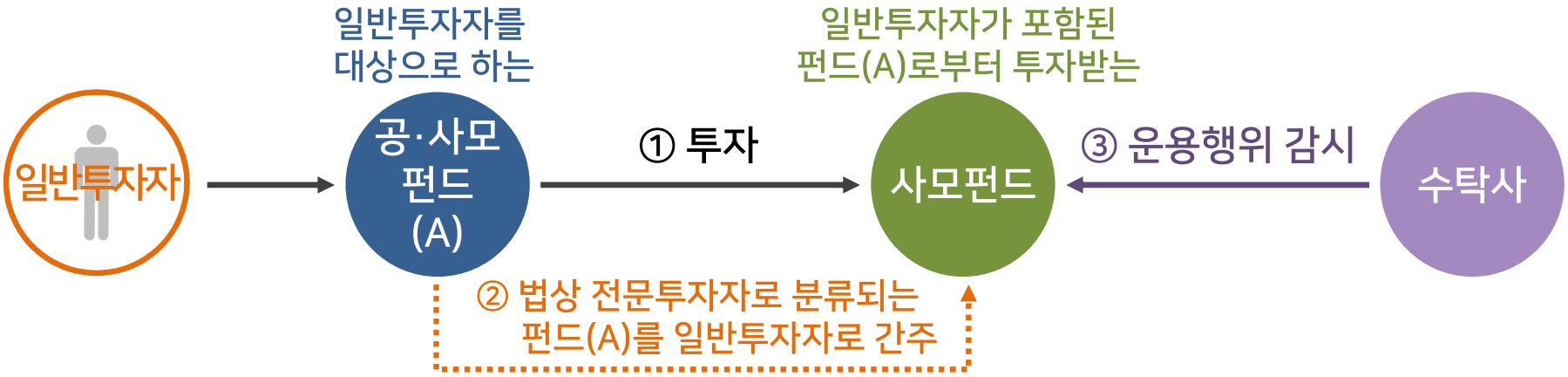

수탁사 : 사모펀드 운용감시

3.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대사 의무

영 §269 ④2. 규칙 §24 ②

※ 적용대상 :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수탁사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명칭, 수량 등이

▪ 운용사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분기 확인

※ 구체적인 집합투자재산 대사 절차는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21.7.1., 금감원)』 참조

< 운용사 – 수탁사 간 집합투자재산 대사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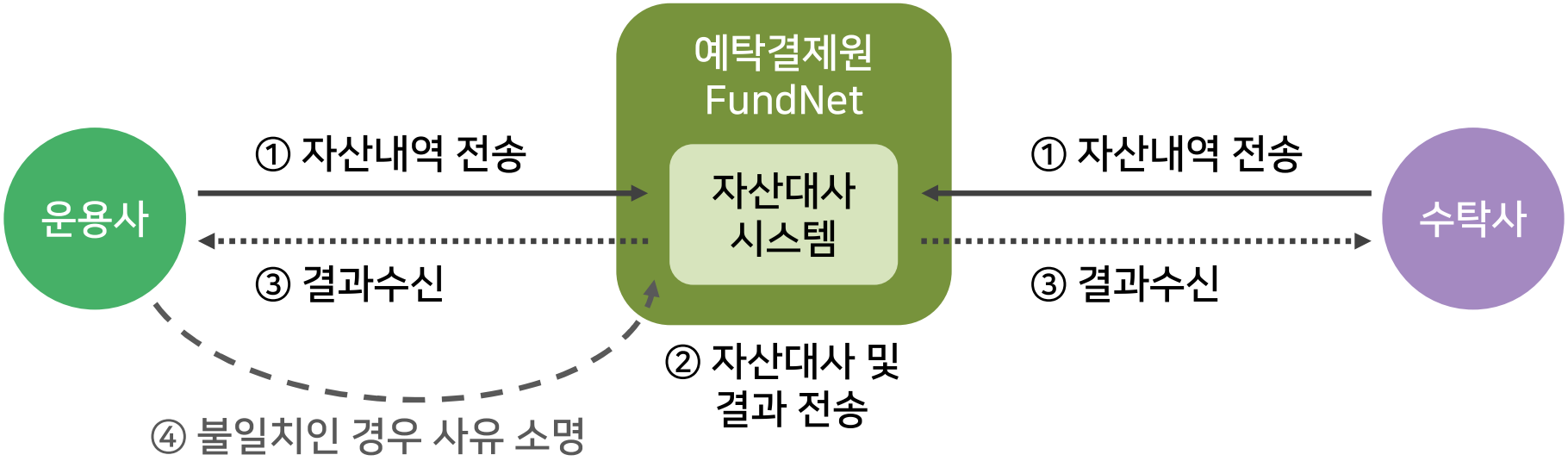

II.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개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차입	400% 이내 (금전차입, 대여, 채무보증, 파생상품 투자 등)	10% 이내 (SPC는 300% 이내)	400% 이내 (금전차입, 대여, 채무보증, 파생상품 투자 등)
대출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불가능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의결권 제한	10% 초과 주식보유분 의결권 행사 제한	해당 없음	의결권 제한 폐지
투자 목적	해당 없음	출자금 50% 이상 2년 내 경영참여목적 투자	투자목적 제한 폐지
지분 취득	해당 없음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지분취득 의무 폐지
보유	해당 없음	취득 후 6개월 이상 보유	지분보유 의무 폐지

운용규제 정비 :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1. 레버리지 한도 일원화 및 산정방식 개선

법 §249의7 ① 영 §271의10 ①~③

❖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하여 펀드의 순재산 대비 400%까지* 차입을 허용

* [현행] 전문투자형(일반) 사모펀드 : 펀드 순재산 대비 400% 이내
경영참여형(기관전용) 사모펀드 : 10% 이내(SPC는 자기자본 대비 300% 이내)

- 차입금액 계산시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RP 매도·공매도)을 포함
-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사모펀드와 SPC*를 합산하여 400%까지 차입 허용

* 이 경우 각 SPC별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액의 비율도 400% 이내여야 함

$$\frac{\text{파생상품 위험평가액} + \text{채무보증액·담보목적물 가액} + \text{금전차입금 총액} + \text{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액·공매도액}}{\text{펀드 순재산(= 자산총액 - 부채총액)}} \leq 400\%$$

운용규제 정비 :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2. 금전대여 방식의 사모펀드 운용방법 명확화

법 §249의7 ② 영 §271의10 ⑧~⑫ 규정 §7-41의6 ⑥

❖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대출 방식의 자산운용을 허용*

* [현행] 전문투자형(일반) 사모펀드 : **허용**. 단, 개인에 대한 대출 제한 등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율**
경영참여형(기관전용) 사모펀드 : **대출 방식의 자산운용 불가**

- 단, **개인** 또는 **유흥업종·사행업종**에 대한 대출 금지
- 이를 회피할 목적의 **대부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의 연계거래 금지

❖ 대출형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이 있는 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만 투자 가능

-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대출형 사모펀드 투자는 제한**됨
- 단, 차주가 **부동산, 특별자산** 등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일반투자자도 투자 가능**

*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출형 사모펀드에 90% 초과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 설정 불가

운용규제 정비 :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3. 경영참여목적 투자요건 구체화

법 §249의7 ⑤ 영 §271의10 ⑱~⑳

❖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허용*

* [현행] 전문투자형(일반) 사모펀드 : **불가** (10%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경영참여형(기관전용) 사모펀드 : **경영참여목적**으로만 운용 가능(존속기간 15년)

▪ 단, **경영참여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5년내 지분 처분의무 부과

①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날

②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한 날

-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
- 정책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 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배 가능

운용규제 정비 : 일반 사모펀드

1. 일반 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법 §249의7 ⑥

❖ 일반 사모펀드의 동일종목 10% 초과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10% 의결권 행사 제한 유지

* 집합투자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인 금융회사가 사모펀드 지분의 30%를 초과하여 투자한 경우

2. 일반 사모펀드의 경영참여목적 투자 허용 관련

법 §249의6 ② 영 §271의9 ②

❖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① 설정·설립 시 즉시보고 사유* 및 ② 지주회사 특례**를 경영참여목적으로 운용하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 경영참여목적 일반 사모펀드가 아래에 해당될 경우 즉시보고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설정·설립 후 2주이내 사후 보고)

1) 같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사모펀드 지분의 30% 이상을 투자한 경우
2) 운용사(또는 투자회사등)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우
3) 운용사(또는 투자회사등)의 특수관계인이 사모펀드 지분의 30% 이상을 투자한 경우

** 경영참여일로부터 10년간 공정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규제 적용을 배제

운용규제 정비 : 기관전용 사모펀드

1. 금융회사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운용규제 유지

법 §249의14 ② 영 §271의20 ② 규정 7-41의13 ①

❖ 금융회사 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전사(신기사 제외), 신보, 기보, 신협, 새마을금고,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2.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특례 적용

법 §249의20 ④ 영 §271의25

❖ 공정거래법상 투자자 정보공시 의무 배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

▪ 자본시장법상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금융주력그룹인 공시대상기업집단

*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보험업은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대비 **금융업·보험업 비중이 75% 이상**인 기업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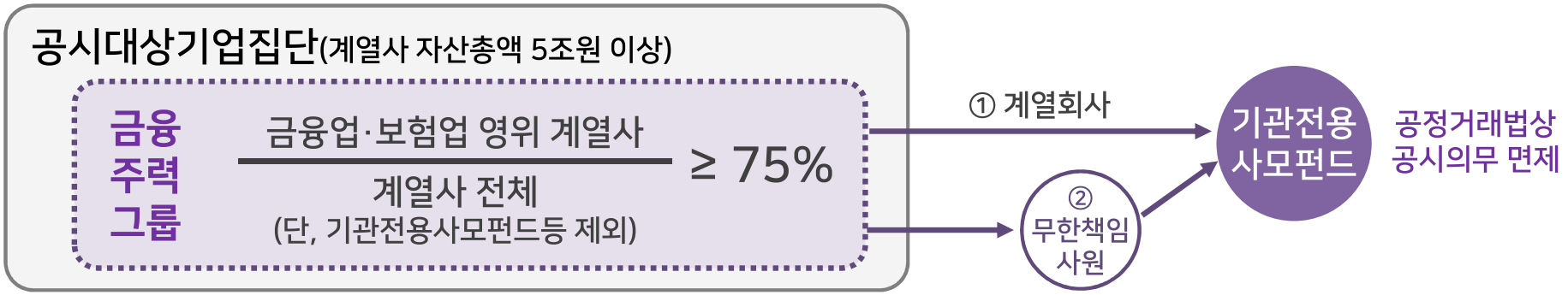

※ (참고) 사모펀드의 경영참여목적 투자 관련

1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또는 정관)에 '경영참여목적 펀드'임을 명시**

법 제249조의7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하기 위한 목적의 사모펀드인 경우 **주된 투자전략을 경영참여목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
(경영참여목적 외의 투자 방법 등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님)

2 **경영참여목적 펀드로 설정·설립한 경우,**

- 사모투자재간접펀드의 투자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펀드는 설정·설립 즉시보고 사유 해당

3 **경영참여목적 투자(10% 이상 지분투자 등)를 한 날로부터,**

- 15년내 해당 지분증권등 처분 의무
- 10년간 지주회사 특례 적용

기타 운용규제 정비

1. 기업재무안정,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관련

법 §249의22, §249의23

❖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만 가능)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 또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설정·설립 가능**

▪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의 **투자대상 및 운용방법은 현재와 동일***하며, **세제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2021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

* 기업재무안정(200%) 및 창업·벤처전문(10%) 사모펀드의 **차입규제는 완화(→400%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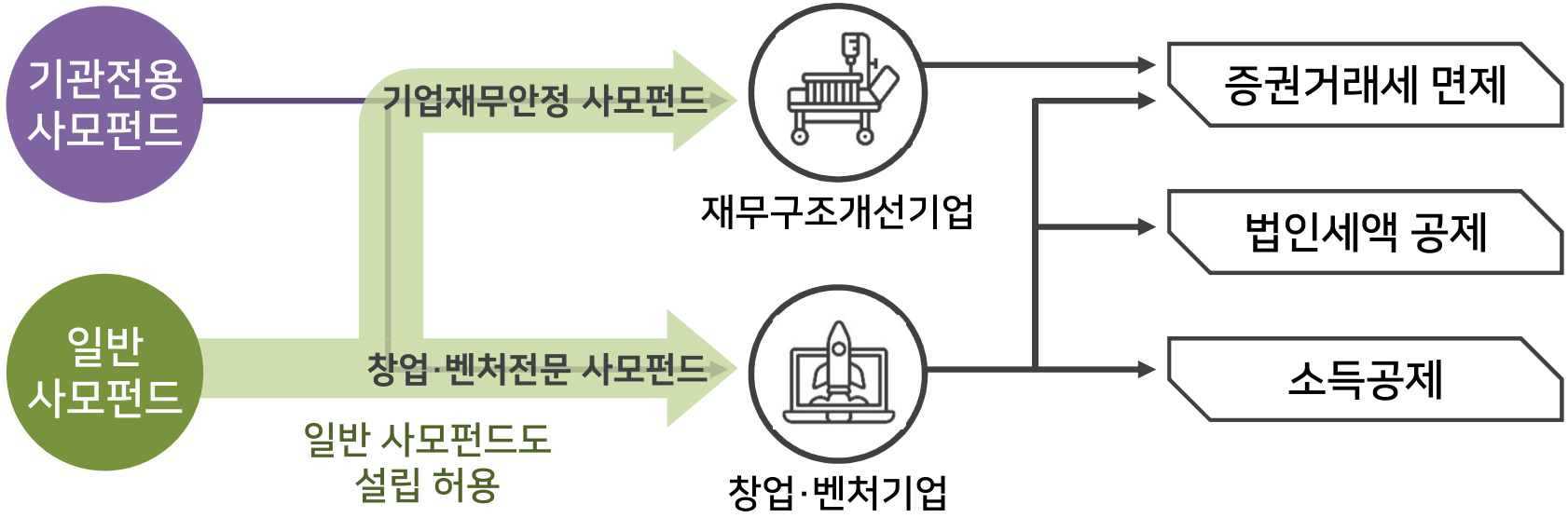

기타 운용규제 정비

2. 기타 사모펀드 운용관련 변경사항

❖ 사모투자재간접펀드의 개념 재정의(영 §80)

- '경영참여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의
  (종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투자광고 대상 일반투자자 범위 조정(영 §271의6)

- 일반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을 반영하여 **투자광고 대상***을 동일하게 조정

  *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일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이상인 **일반투자자**
  (3억원, 레버리지 200% 초과 펀드의 경우 5억원)

❖ 펀드 설정·설립 보고 시 기재사항 추가(영 §271의13, 규정 §7-41의6 ①,③)

-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PBS 증권사**에 관한 사항
- 일반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 설립** 시, **투자목적회사의 출자자**(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

III.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

등록의 직권말소 제도 도입

1. 등록의 직권말소

법 §20의2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의 직권말소 제도 신설

▪ 6개월간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영업 미영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의 신속한 등록말소 가능

2. 직권말소된 경우의 재진입 제한

영 §21 ⑤, §271의2 ⑤

❖ 등록 말소된 금융투자업자 및 그 말소 당시의 임원 또는 대주주는

▪ 5년간 해당 등록 업종으로의 재진입을 제한 (직접 등록 또는 대주주가 되는 것을 포함)

* (참고) **등록 취소** : 위법행위 등의 정도가 큰 경우로서, **금융업 영위**(재진입) **영구 제한**

등록 말소 : 실적부진, 영업 미영위 등의 경우로서, 동일 금융투자업 **재진입을 5년간 제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1.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 금지

영 §87 ④ 1.

❖ 판매사·투자자에게 제공된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2. 펀드의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영 §87 ④ 8의6·7.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자산을 **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하면서 해당 **금전을 대여받은 자**로부터

- **대출 중개·주선·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 규제 회피 목적으로 **제3자의 펀드**를 이용하거나, **이면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도 금지

< (참고) 규제 회피 목적의 이면계약 또는 제3자 펀드 이용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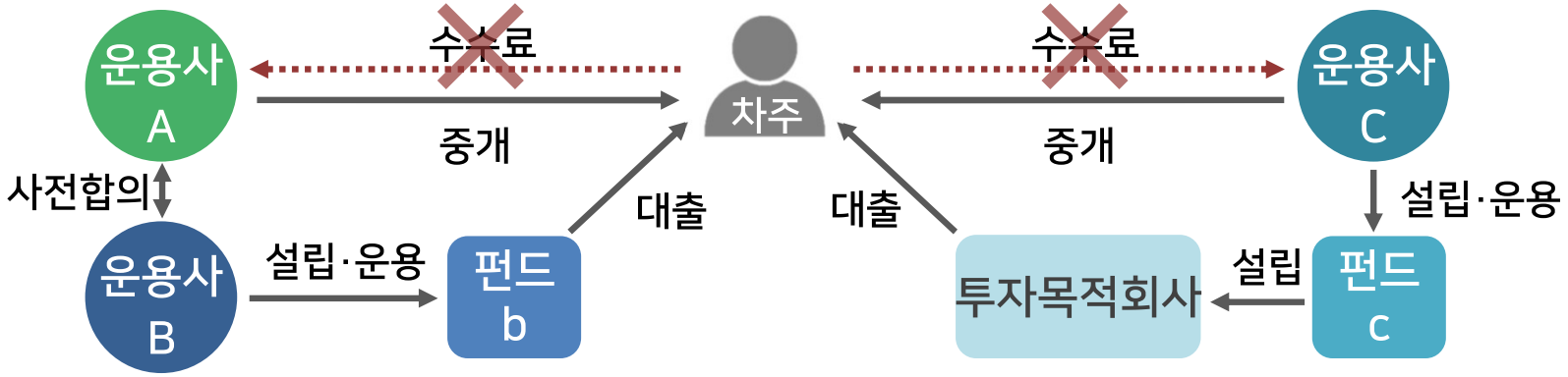

※ (참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21년 旣시행된 제도

1. 최소투자금액 상향 및 공모 판단기준 강화 ('21.2월 시행령 개정)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 상향 : 1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영 §271 ②)

❖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펀드는 동일한 펀드로 판단하도록 기준 강화 (영 §129의2)

2.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 금지 ('21.3월 시행령 개정)

❖ 동일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하여 49인 초과 여부를 판단 (영 §14 ②)

3. 불건전 영업행위 대상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21.3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 금지 (영 §87 ④ 8의3.)

❖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행위(꺾기) 금지 (영 §87 ④ 8의4.)

❖ 1인펀드 설정금지 회피를 위해 자사펀드 등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 (영 §87 ④ 8의5.)

❖ 자전거래시 비시장성자산의 공정가액 거래 및 월별 자전거래 한도 설정 (규정 §4-59)

❖ 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차입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 (규정 §4-54, §7-8)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감독 정비

1. 업무집행사원 운용전문인력 요건 구체화(1년 유예)

법 §249의15 ① 3. 영 §271의21 ③ 규정 별표2의3

❖ 업무집행사원 등록시 최소한의 전문인력 요건(2인 이상)*을 도입

* 증권운용전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또는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신설)을 2인이상 보유

▪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 ① GP에서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3년 이상 근무
또는 ② 금융기관·GP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교육을 이수한 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3-14-1) 운용인력 요건(현행)

증권운용, 부동산운용, 또는 일반사모펀드운용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

단, 증권운용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보유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운용인력 요건(신설, 1년 유예)

증권운용, 부동산운용, 또는 기관전용사모펀드운용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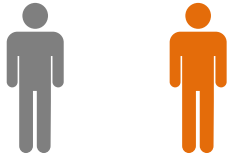

(단서조건 없음)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감독 정비

2.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법 §249의14 ⑩, ⑫, ⑬

❖ 업무집행사원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시 2주 이내 변경보고** 및 매년 1회 재무상태표 제출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

*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

❖ **금융위의 승인이 없더라도 투자자(LP)가 GP의 위반행위 등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허용**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기관투자자로 제한**되므로, 투자자와 GP간의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운용행위 금지 등

영 §271의20 ⑨ 7.

❖ **펀드 운용업무와 펀드 자산의 취득·매각 실행업무 겸직 금지*** (집합투자업자도 동일하게 적용 중)

* (예외) 경영참여목적의 운용, 펀드 계좌별 매매거래 분리, 장내 프로그램매매, 장내 파생상품 거래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사모펀드 운용행위 금지(1~3년 유예)** (집합투자업자도 동일하게 적용 중)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전 ('21.10.21일까지) 설립**된 사모펀드 : **3년간 유예**
- **법 시행 후 (10.22일부터) 설립**된 사모펀드 : **1년간 유예**

IV. 모험자본 공급기능 확충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

사모펀드 투자자 수 49인 → 100인으로 확대

법 §9 ⑲

❖ 사모펀드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에서 **최대 100인까지 확대***

* 투자자 수 확대는 투자자 보호장치 및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기관전용사모펀드에만 적용 (개별법에 따른 사모펀드는 49인 유지)

▪ 단, **일반투자자의 수는 현재와 같이 49인**으로 유지(주로 전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효과)

사모펀드 투자자

투자자 수 산정대상

일반투자자

49인 이하 유지 (현재와 동일)

+

전문투자자(기관 제외)

투자자 수 확대

≤ 100인

* 전문투자자만으로100인까지 구성 가능

기관투자자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자율성 제고

10% 지분보유 의무 등 폐지에 따른 투자 활성화

법 §249의12 ① 영 §271의15 삭제

❖ 기관전용 사모펀드(現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 경영참여목적으로만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운용규제 적용
(10% 지분보유 의무, 출자금 50% 이상 주목적 투자, 대출 불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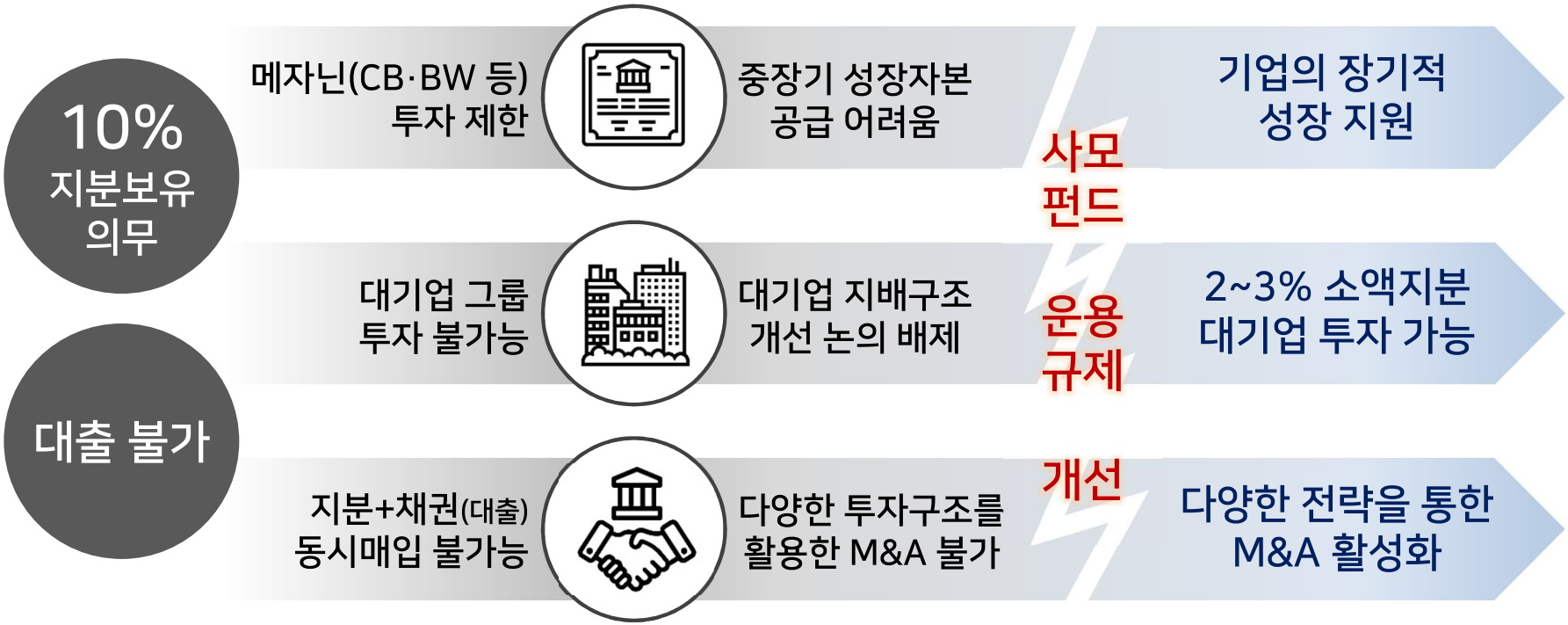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

'기관전용'에 맞는 투자자(유한책임사원, LP) 범위 조정

법 §249의11 ⑥ 영 §271의14 ④,⑤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만큼,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개인**(외국인, GP의 임원·운용인력 제외)**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

<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

[법 §249의11 ⑥]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전문투자자로서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자]

기관투자자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특수법인(예보·캠코 등)
준하는 자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 법인전문투자자 수준의 투자경험(금융투자잔고 100억, 외감법인 50억) 이상 •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개인 포함)

[GP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

- 1억원 이상 시딩투자만 가능
- 운용인력 :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운용전문인력을 의미**

투자목적회사 규제 완화

투자목적회사 관련 규제 폐지·완화 등

법 §249의7 ② 5., §249의13 영 §271의10 ⑬, §271의19

❖ 모든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 목적**으로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의 **투자자 수, 레버리지 한도 등의 규제를 완화**

❖ 다만, **일반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및 관련규제 회피 목적의 **SPC 외 법인 활용 금지**

*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는 **자산 보관·관리 위탁의무** 및 **수탁회사 감시의무** 적용

다양한 투자목적으로 활용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영참여목적 투자**로만 제한적으로 허용

↓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법인 또는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 투자목적으로** 활용

투자자수 규제 완화

사모펀드 + SPC 합산 **49인** 이하

↓

사모펀드 + SPC 합산 **100인** 이하

레버리지 한도 확대

투자목적회사 기준 **300%** 이하

↓

투자목적회사 기준 **40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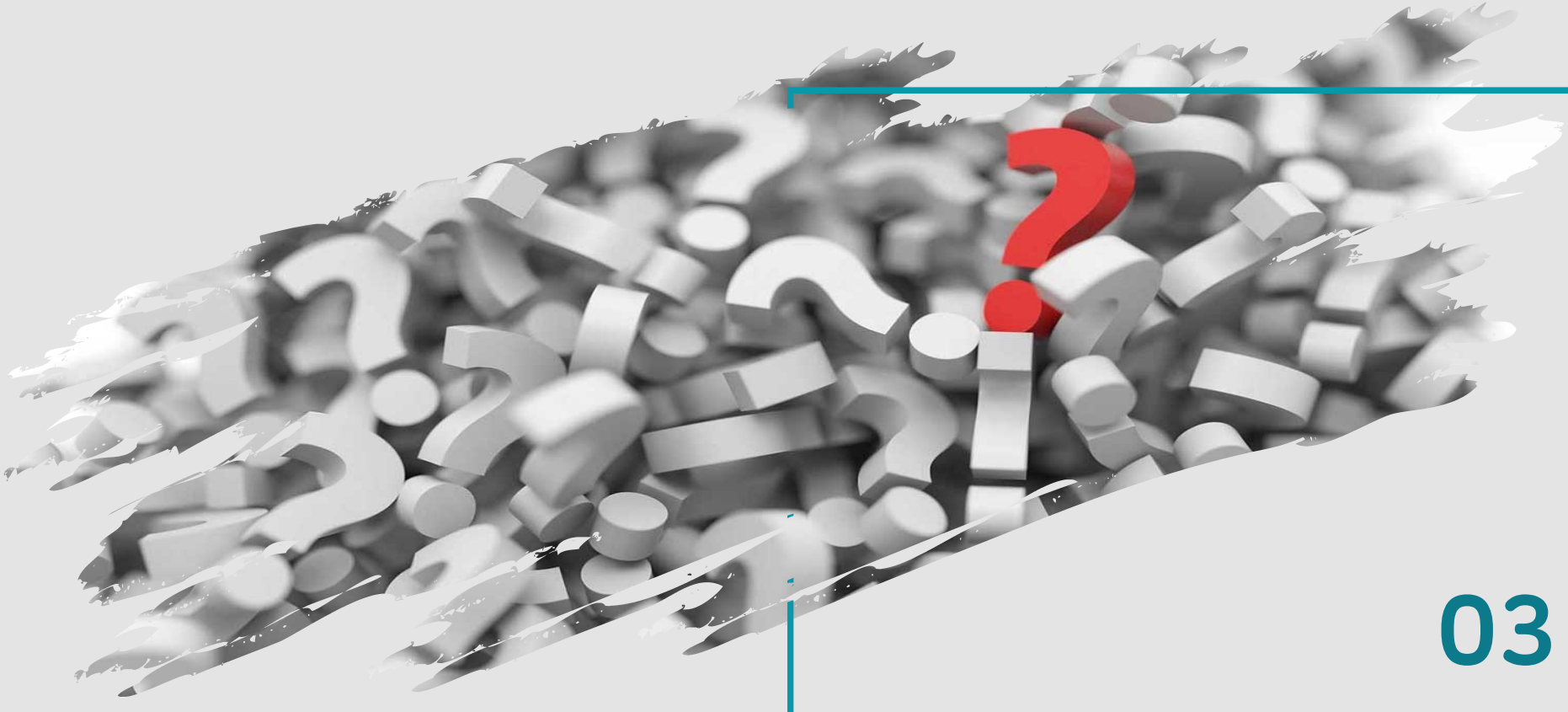

03

주요 경과조치 안내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규 적용

[일반 사모펀드 경과조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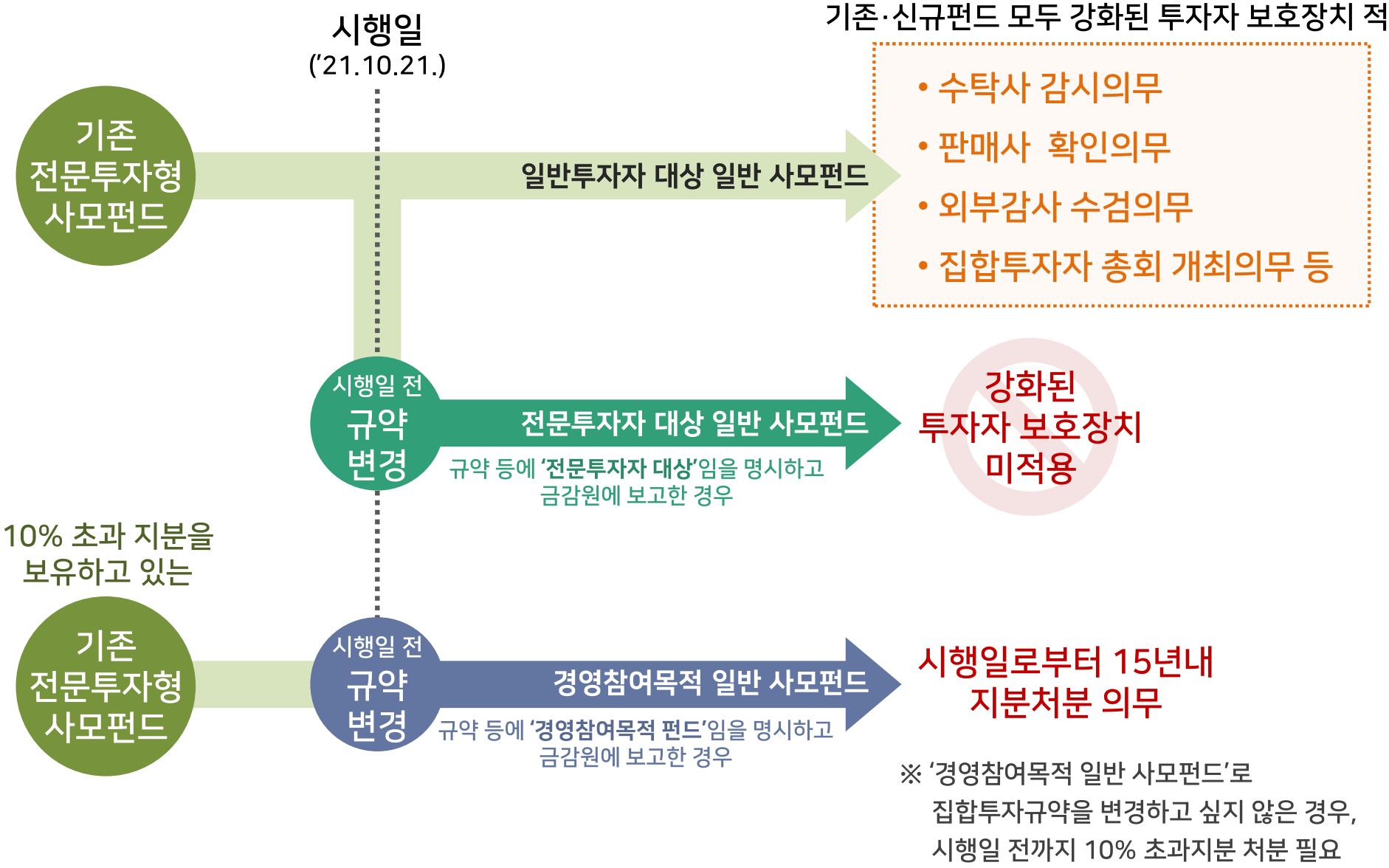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규 적용

1. 강화된 운용규제의 적용 대상 사모펀드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한하여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판매사·수탁사 감시의무 등) 적용

▪ ① 집합투자규약*, ② 핵심상품설명서, ③ 펀드 설정·설립보고서 및 ④ 영업보고서에

'전문투자자(법 §9⑤)' 대상 사모펀드임을 명시하지 않은 모든 일반 사모펀드가 해당

* (집합투자규약 반영 필요사항) 1.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집합투자증권 발행(추가발행 포함)
2. 전문투자자에게만 집합투자증권의 양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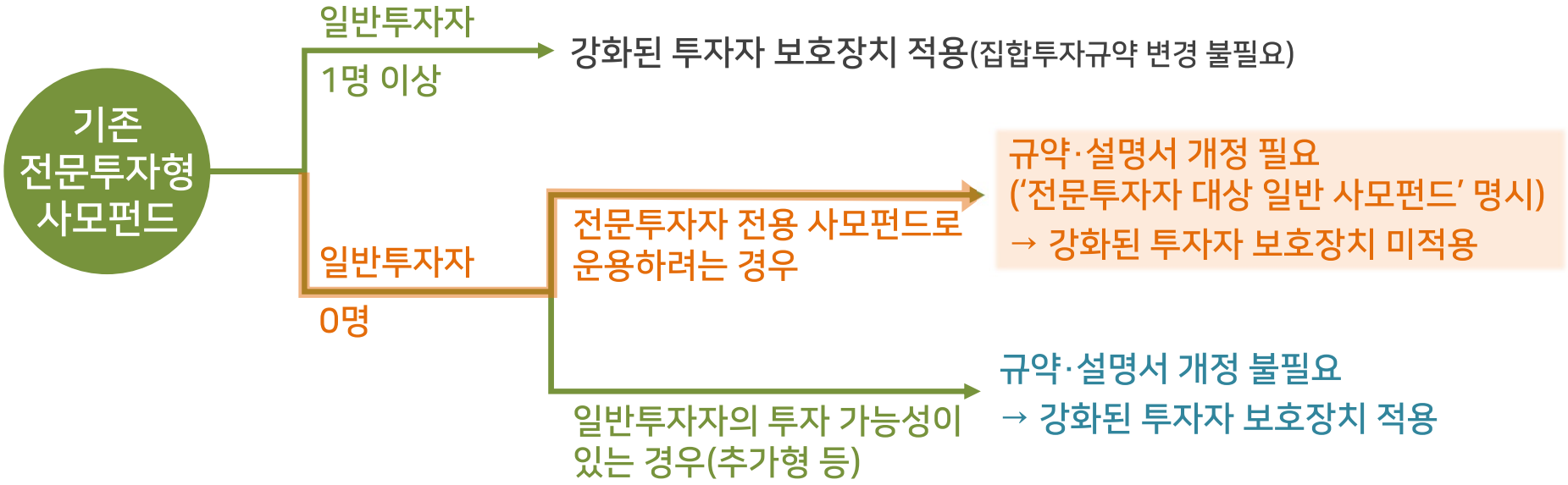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규 적용

2. 판매사 및 수탁사의 운용감시 대상

❖ [판매사] 시행일('21.10.21.) 이후 운용사가 제공한 자산운용보고서와 핵심상품설명서 비교

▪ 시행일 이전에 투자권유·판매한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도 모두 운용감시 대상*

* 이 경우 투자제안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시행일 전 투자권유 시 제공한 **투자설명자료**와 자산운용보고서 비교

❖ [수탁사] 시행일('21.10.21.) 이후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신규 운용지시부터 확인

▪ 시행일 이전부터 수탁하고 있던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도 동일하게 적용

3.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 시행일('21.10.21.) 이후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기존·신규 일반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하는 때부터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검증·교부의무 적용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규 적용

4. 경영참여목적으로 운용하는 펀드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10% 이상 지분투자를 하고 있던 경우,

▪ 시행일('21.10.21.) 전까지 집합투자규약·설명서 등에 '경영참여목적 펀드'임을 명시

❖ 경영참여목적 펀드라고 명시한 경우, 시행일('21.10.21.) 부터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 부과

▪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경영참여목적이 아니므로 해당 10% 초과 지분은 즉시 처분 필요

5. 펀드 설정·설립 즉시 보고사항

❖ 경영참여목적 펀드에 적용되는 설정·설립 즉시 보고는 시행일('21.10.21.) 이후 신규펀드부터 적용

▪ 단, 기존 펀드가 규약 등 변경으로 경영참여목적 펀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약 및 설명서 개정과 함께 영 제271조의9 제2항에 따른 즉시 보고사항을 금감원에 보고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규 적용

6. 외부감사 대상

❖ 일반투자자 대상 기존·신규 일반 사모펀드는 **시행일**('21.10.21.)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기준일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실시

❖ **시행일**('21.10.21.) 이후 펀드의 해지·해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회계감사** 실시

* (참고) 외부감사 대상펀드(**공모펀드와 동일한 요건**)

①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② 자산총액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7.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 **시행일** ('21.10.21.) 이후 환매연기 또는 만기연장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필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규 적용

8. 레버리지 한도 계산

❖ **시행일**('21.10.21.) 이후부터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레버리지 계산 시 합산

-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RP매도 또는 공매도'** 금액 역시 차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

❖ 개정법규에 따라 **레버리지 비율이 변경된 경우,**

- **기존 투자자** : 기존 최소투자금액 유지. 단, 기존투자자도 **추가 투자 시에는 변경된 기준** 적용
- **신규 투자자** : 변경된 최소투자금액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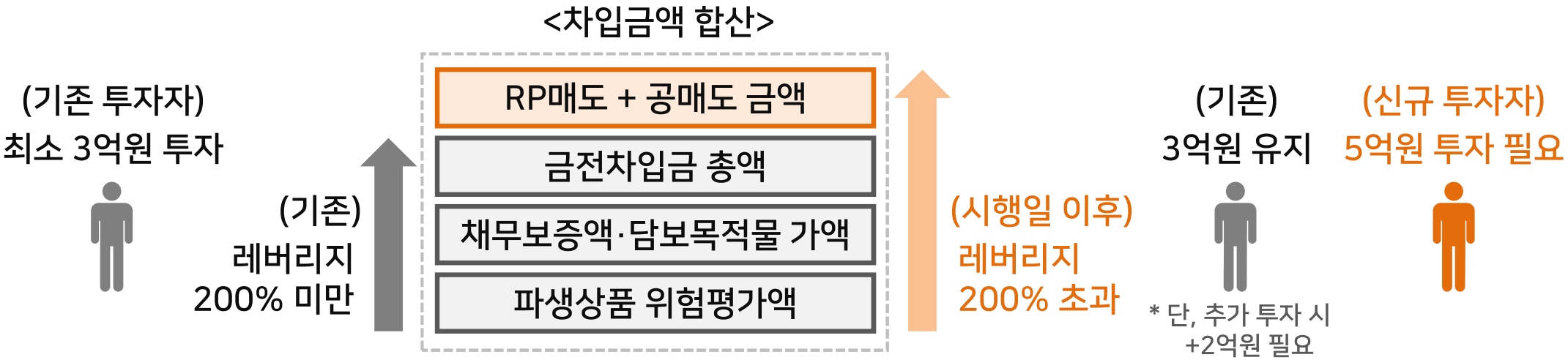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규 적용

1. 경영참여목적으로 운용하는 펀드

❖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경영참여목적으로 운용할 경우 정관에 '경영참여목적 펀드'임을 명시

- 단, **시행일**('21.10.21.) 이전 설립된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경영참여목적 펀드로 간주**

❖ **10% 이상 지분투자** 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임원 임면 등)의 경우,

- 해당 투자를 한 날(시행일 이전 포함)부터 계산하여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15년 존속기한 삭제)
- 단, **종전 운용규제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15년 존속기한 존치

* ① 금융기관(금융투자업자, 신기사 등 제외)이 GP인 기존 또는 신규 기관전용 사모펀드

② LP 중 일반투자자, 비상장법인 등 개정 법에 따른 유한책임사원이 아닌 투자자가 포함된 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규 적용

2. 종전 운용규제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 종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적용받는 펀드 :

① 금융기관(금융투자업자, 신기사 등 제외)이 GP인 기존·신규 기관전용 사모펀드

② 일반투자자, 비상장법인 등 개정 법에 따른 LP가 아닌 투자자가 포함된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 금융기관이 GP인 기존 펀드는 LP 구성과 무관하게 종전 규제가 적용되므로 정관 변경 불필요

❖ 금융기관이 GP가 아니면서, 새로운 운용규제를 적용받으려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LP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변경)하고, 금감원에 변경내용을 보고

* 기존 운용규제를 적용받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계속 운용하려는 경우, 정관 변경 불필요

3. 운용전문인력 요건 등 관련

❖ 업무집행사원의 운용전문인력 등록·유지 요건(2인 이상)은 1년간 적용 유예

❖ 운용전문인력의 펀드운용 규제는 시행일('21.10.21.) 이후 신규펀드 1년간, 기존펀드 3년간 유예

04

향후 일정

'21.10월,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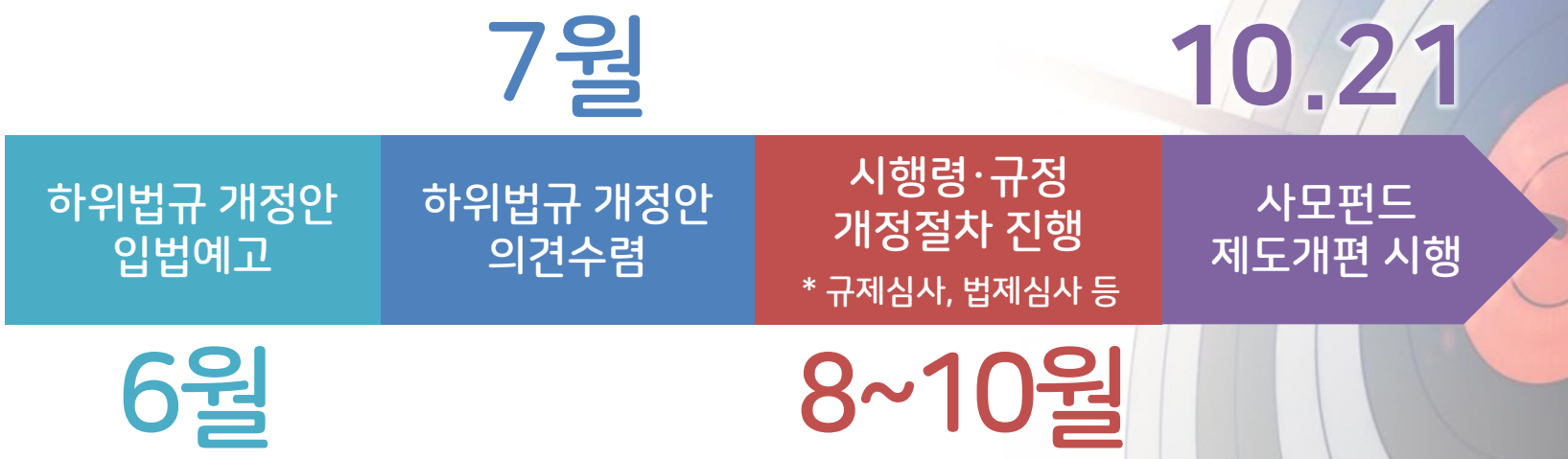

감 사 합 니 다

금융위원회